

문화공간디자인 연구소규정

□ 제정 : 2017. 8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문화공간디자인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연구소는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국가기관 및 외부로부터 위탁과 수탁에 관한 연구용역
2. 기타 연구소의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4조(소속) 연구소는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기구로 둔다.

제5조(조직 및 운영)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

② 외부 위탁 및 수탁 연구용역사업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한다.

제6조(임명 및 임무)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본교의 전임교원은 누구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산업체 인사, 타 대학 교원을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심의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.

제8조(재정 및 운영) ① 연구소의 재정은 용역 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② 운영은 본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간접비) 연구소의 연구용역비의 10%를 일반관리비 및 기관공통경비 명목으로 공제한다.

제10조(폐지) ①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연구소는 폐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대한 운영평가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